



시보는 공무원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포항시보

제1079호 2016. 2. 2(화)

◀ 입법예고 ▶

-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제2016 - 4호) 2
-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제2016 - 5호) 10
-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제2016 - 6호) 16
- 「포항시 영유아 보육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제2016 - 7호) 24

◀ 공 고 ▶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제2016 - 117호) 38

◀ 기 타 ▶

- 1월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공표 42

회 람								
--------	--	--	--	--	--	--	--	--

입 법 예 고

포항시 공고 제2016-4호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1. 26.

포 항 시 장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 강소기업을 육성·지원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지역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근거 마련과 산학연관 협력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유망 강소기업 및 강소기업의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위한 지원 사업(안 제12조제7호 및 제20조제1항제4호)
- 나. 산학연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지식기반산업, 첨단소재산업, 로봇산업 발굴 및 육성(안 제23조제13호)
-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세기본법」 제13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2. 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강소기업육성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 270-3844, FAX 270-2429, E-mail : beakmy@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산업환경”을 “산업 환경”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재무재표”를 “재무제표”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생산공정”을 “생산 공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지원사업”을 “지원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의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중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다만, 탈세혐의가 있을 시 제외)

제19조제1항 중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의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중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다만, 탈세혐의가 있을 시 제외)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력사업”을 “협력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원사업”을 “지원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지원사업”을 “지원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지식산업 집적지 조성 및 지식기반산업, 첨단소재산업, 로봇산업
발굴 및 육성

제24조의 제목 “(산학연관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산학연관 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제24조 중 “협력사업”을 “협력 사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책무) 시장은 시 지역의 <u>산업환경</u>을 개선하고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소기업의 선정·육성 및 산학연관 협력 구축의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제4조(책무) ----- <u>산업환경</u>----- ----- ----- ----- -----</p>
<p>제7조(선정신청) ① 유망 강소기업에 선정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유관기관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최근 3년간 <u>재무제표</u></p> <p>5.·6. (생략)</p> <p>② (생략)</p>	<p>제7조(선정신청) ①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재무제표</u></p> <p>5.·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지원 등) ① 시장은 유망 강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지원할 수 있다.</p> <p>1.·2. (생략)</p> <p>3. <u>생산공정</u> 개선,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 경영·품질혁신 사업</p> <p>4.·5. (생략)</p> <p>6. 기업 요구기술 인력 공급 등 인력 <u>지원사업</u></p> <p><신 설></p>	<p>제12조(지원 등) ①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생산 공정</u> ----- -----</p> <p>4.·5. (현행과 같음)</p> <p>6. ----- - <u>지원 사업</u></p>
<p><신 설></p>	<p>7.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의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중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다만, 탈세혐의가 있을 시 제외)</p>

7. (생략)

② (생략)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⑤ (생략)

제20조(지원 등) ① 시장은 강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제23조(산학연관 협력사업의 추진) 시장은 제21조에 따른 산학연관 협력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학연관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망 강소기업 등의 성장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지원사업

2. ~ 9. (생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

----- 과반수-----
-----.

② -----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지원 등) ① -----

-----.

1. ~ 3..(현행과 같음)

4.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의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중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다만, 탈세혐의가 있을 시 제외)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산학연관 협력사업의 추진) --

----- 협력 사업-----
-----.

1. -----
----- 지원 사업

2. ~ 9. (현행과 같음)

10. 특허 인증, 디자인 개발 등 지식
재산창출 지원사업

11. · 12. (생 략)

<신 설>

13. (생 략)

제24조(산학연관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산학연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학연관 협력사업을 수행하거나 촉진·지원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사업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0. -----
----- 지원 사업

11. · 12. (현행과 같음)

13. 지식산업 집적지 조성 및 지식기
반산업, 첨단소재산업, 로봇산업
발굴 및 육성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제24조(산학연관 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
----- 협력 사업-----

-----.

포항시 공고 제2016 - 5호

공 고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8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체육시설의 경기장 사용시간을 실제 운영시간에 맞게 개정하고,
- 나. 포항수영장 이용료의 추가 사용시간 요금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용객의 민원을 해소하는 등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체육시설 경기장 사용시간(조건)을 규정(안 제4조)
- 나. 포항수영장 1회 사용시간 및 시간 초과시 추가이용료 명시(안 별표3)

3.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국민체육진흥법」

4. 개정조례안 : 불 입

5. 입법예고 기간 : 2016. 1. 28 ~ 2016. 2. 17(20일)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체육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제출서식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1 포항시청 (790-722)
포항시청 체육지원과(☎ 270-2783, FAX 270-2790)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 간 : 06:00부터 09:00까지

제4조제2항제3호(중전의 제2호) 중 “23”을 “24”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중전 제3호)에 “주·야간 시간 중”을 “사용시간의”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이 용 료 (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이용분	기 준	1명당 이용료	비 고	
국민체육센터	농구,배구	1시간	1,500		
	탁구,배드민턴	월	30,000		
	헬스	1회	2,000		
		월	30,000		
	에어로빅	월	30,000		
	요가	월	30,000		
	취미교실/강의	월(주1회)	5,000		
축구장	평일	주간	2시간	30,000	축구장, 풋살구장, 족구장은 1면당 이용료로 한다
		야간	2시간	50,000	
	토·일 ·공휴일	주간	2시간	40,000	
		야간	2시간	60,000	
풋살구장 /족구장	주간	1시간	20,000		
	야간	1시간	22,000		
포 항 수영장	어른	1회(3시간)	3,000	여성 수영회원 중 13세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월	68,000		
	1회 사용시간 초과시 시간당 50/100 추가				
시민볼링장	어른	1게임	2,500		
	청소년	1게임	2,000		
테니스장	개인	1코트 (1시간)	주간	2,000	
			야간	3,000	
정구장	개인	1코트(1시간)	2,000		
국궁장	개인	1회(1시간)	2,000		
인라인롤러장	개인	1명 2시간	2,000		
포항스포츠 아카데미	골 프	월	40,000	주경기장, 포항체육관 홍해실내체육관 운영종목 신설되는 종목의 이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탁 구	월	20,000		
	배드민턴	월	20,000		
	농 구	월	20,000		
	배 구	월	20,000		
	족 구	월	20,000		
	핸 드 볼	월	20,000		
	프리테니스	월	20,000		
	에어로빅	월	20,000		
	요 가	월	20,000		
	헬 스	월	20,000		
	댄스스포츠	월	20,000		
	라인댄스	월	20,000		
밴드체조	월	20,000			
만인당	개인	1회(2시간)	2,000		

신·구 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사용료 및 사용허가) ① (생략)</p> <p>②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와 같이 하며, 경기장 사용 시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p>1. <신 설></p> <p>1. 주간 : 09:00 부터 18:00까지</p> <p>2. 야간 : 18:00 부터 23:00까지</p> <p>3. 사용자는 <u>주·야간 시간</u> 중 일부만 사용하여도 그 사용료의 전액을 계산한다.</p> <p>③~④ (생략)</p>	<p>제4조(사용료 및 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u>조간 : 06:00 부터 09:00까지</u></p> <p>2. (현행 제1호와 같음)</p> <p>3. 야간 : 18:00 부터 <u>24:00까지</u></p> <p>4. ---- <u>사용시간의</u> -----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신·구 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u>이 용 료</u>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3】 <u>이 용 료</u> (제4조제2항 관련)				
(단위:원)					(단위:원)				
구 분	이용분	기준	1명당 이용료	비 고	구 분	이용분	기준	1명당 이용료	비 고
포 항 수영장	어 른	1회	3,000	여성 수영회원 중 13세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 감면 받을 수 있다.	포 항 수영장	어 른	1회	3,000	여성 수영회원 중 13세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월	68,000				월	68,000	
					1회 사용시간 초과시 시간당 50/100 추가				

포항시 공고 제2016-6호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 1. 27.

포 항 시 장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14년 5월 23일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령의 전면개정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
- 나. 적용범위를 “포항시가 발주하는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포항시와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한 공사”로 확대 적용(안 제3조)
- 다. 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를 “감사담당 업무부서”로 개정(안 제8조)

3. 관련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39,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추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건설공사 등의 별점기준)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 제13조(기술자문위원회 구성)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2. 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감사담당관,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 270-3172, FAX 270-2030, E-mail : wkd2000@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10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를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의거 선임된 건설공사 감독자나 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가 공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부실공사”란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별점측정기준에서 정하는 주요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제4호 중 “부실별점”이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을 “부실별점”이란 영 별표 8”로 한다.

제3조 중 “포항시가 발주하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를 “포항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한다)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포항시가 설립한 공기업(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그 밖에 건설공사”를 “건설공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를 “법 제5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현장을 관리 하고,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을 “정지를 명할”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및 제26조의2”를 “법 제55조 및 제62조”로 한다.

제8조 중 “설치하고,”를 “감사업무 담당 부서로 하고”로, “감사담당관”을 “감사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조치계획”을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 및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추정 등 조치계획”으로, “을”을 “과 함께”로 한다.

제12조 중 “「포항시 일상감사 규정」”을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판정결과에의 조치) 발주부서는 부실공사 판정결과에 따라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및 건축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라 벌점부과 등 행정적인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10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p> <p>3. "부실공사"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1,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별표 4, 별표 10에 따른 부실별점 측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4. "부실별점"이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5호가목의 부실별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p> <p>-----.</p> <p>1. (현행과 같음)</p> <p>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의거 선임된 건설공사 감독자나 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p> <p>-----.</p> <p>3. "부실공사"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별점측정기준에서 정하는 주요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4. "부실별점"이란 영 별표 8 -----</p> <p>-----</p> <p>-----.</p>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가 발주하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의 공사에 한한다.</p>	<p>제3조(적용범위) ----- 포항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한다)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포항시가 설립한 공기업(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p> <p>-----.</p>
<p>제 4조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p>	<p>제4조(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p>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현장을 관리하고,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7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① 시장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 설치)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처리를 위하여 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하고, 전담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전담부서는 제9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

1. ~ 3. (현행과 같음)

4. 건설공사-----

제5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 ① -----

----- 법 제53조-----

② -----

----- 정지를 명할 -----.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55조 및 제62조-----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 설치) -----

----- 감사업무 담당 부서로 하고 --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제10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
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을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2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장은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포항시 부실공사
방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포항시 일상
감사 규정」 제13조와 병행하여 운영
한다.

제14조(판정결과의 조치) 발주부서는
부실공사 판정결과에 따라 설계사·
시공사 및 감리업체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관계기관에 행정
적인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부실공사 여
부의 판정 및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
측정 등 조치계획-----
----- 과 함께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설치·운영) -----

-----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

제14조(판정결과의 조치) 발주부서는
부실공사 판정결과에 따라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
기술용역업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및 건축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라
벌점부과 등 행정적인 조치를 요청
하여야 한다.

포항시 공고 제2016 - 07호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포항시장

「포항시 영유아 보육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 12월 15일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3. 관련법령

- 「영유아 보육법」 제7조
- 「포항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9조

4. 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6년 01월 29일~2016년 02월 18일(20일간)

6. 의견제출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 (참조 : 출산보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제출서식

규 칙 안 내용	의 견	비 고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출산보육과(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 전화 054)270-3022, fax 054)270-373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포항시”를 “「포항시」로, “조례”를 “조례」”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보육정보센터의 위탁운영자 선정)”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자 선정)”으로 하고, 제2조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센터”로, “보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센터”로 한다.

제4조 중 “보육정보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세자녀”를 “세 자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호에서 제4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별표 1 중 명칭란에 창포 어린이집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창포 어린이집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075번길 6(창포동)
---------	----------------------------

별지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고 별지 제2호 제8조제1항가목을 삭제하고 나목에서 라목까지를 가목에서 다목으로 한다.

별지 제5호제2조 “기간만료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으나”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3. 10. 1>

포항시 시립어린이집 명칭과 소재지(제5조 관련)

명 칭	위 치
구룡포어린이집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일출로 125
연일어린이집	포항시 남구 연일읍 철강로 41번길 31
양포어린이집	포항시 남구 장기면 동해안로 3289-17
대보어린이집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 209번길 13
흥해어린이집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 73-7
포항시영아어린이집	포항시 남구 상공로 174번길 11(대도동)
포항24시간보육어린이집	포항시 북구 죽도로 28번길 66-10(죽도동)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사랑어린이집	포항시 남구 형산강북로 389(해도동)
색동어린이집	포항시 북구 법원로 25번길 19(장성동)
포항시청어린이집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학산어린이집	포항시 북구 장미길 31(학산동)
시립오천어린이집	포항시 남구 해병로 347번길 17
시립청림어린이집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001(청림동)
포항시립장량어린이집	포항시 북구 장량중앙로 17 장량휴먼시아 관리동
시립니하오어린이집	포항시 북구 문화로 13번길 17(덕수동)
시립Thank you어린이집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 39번길 21(대도동)
창포어린이집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075번길 6 (창포동)

[별지 제1호 서식]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결정통지서(제2조 관련)

신청인	성명(법인·단체명 대표자)		법인·단체명	
	주소			
센터 개요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센터장 성명		생년월일	
	설치일			
시설 설비	자료실	제공미터	상담실	제공미터
	교육실	제공미터	놀이터	제공미터
종사자	센터장	인	보육전문요원	인
	전산원	인	영양사	인
	간호사	인	기타	인
예산(천원)	수입액 원	지출액 원	비고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 계약서(제3조 관련)

(앞쪽)

포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위탁자 포항시장을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을 통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어린이집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제2조 (위탁시설) “갑”은 다음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을”에게 위탁관리하게 한다.

1. 명 칭 : 포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2. 위 치 :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 39번길 (상도동)
3. 구성원수 : 명

제3조 (위탁업무대상) “갑”이 “을”에게 위탁할 업무는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제4조 (센터의 운영 등)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을”이 정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위탁기간 및 근무시간)

1.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정하고, “갑”이 필요하다도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근무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정규 근무시간에 따른다.

제6조 (위탁조건)

1. 센터관리 및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갑”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2. “을”은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해당연도 9월 3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센터의 장 및 보육전문요원에 대한 임명과 해임은 수탁자가 하며,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1. “을”은 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전문요원 인원을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2. “을”은 보조금 및 재산을 센터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을”이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을”은 관계 법령 및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갑”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뒤쪽)

제8조 (위탁의 취소 등)

- 1. 다음의 경우에 “갑”은 계약기간중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가. “을”에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7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삭제)
 - 나. “갑” 또는 “을”의 사정에 의거 상호 해약협약이 있었을 경우
 - 다. “을”이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 라. “을”이 사회적·경제적 물의로 지역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 2.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을”은 센터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 1. “갑”은 “을”의 센터 운영사항을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 “갑”은 제1호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을”은 센터를 운영·관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갑”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관리)

- 1. “을”은 시설을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난방시설, 전기, 유류, 가스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센터 운영 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 및 운영상 과실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이 지기로 한다.

제12조 (기타)

- 1. “을”이 집행하는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한다.
- 2. 본 계약의 조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 협의하여 “갑”의 결정에 따른다.
- 3. 영유아보육법령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공증하고 “갑” 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포 항 시 장 (인)

수탁자(을) (인)

■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3. 10. 1>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제3조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시설명칭			
소재지			
위탁기간		위탁해지일	
해지사유 (포기사유)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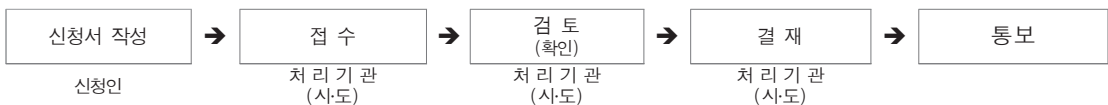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인수인계서 2. 센터 직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3. 10. 1>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통지서(제7조 관련)

신청인	성명(법인·단체명 대표자)		법인·단체명
	주소		
시설 개요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생년월일
	설치예정일		보육정원
시설 설비	보육실	양호실	
	제공미터	제공미터	
	놀이터	조리실	
	제공미터	제공미터	
사무실	목욕실		
제공미터	제공미터		
대지	비상재해 대비시설		
제공미터	제공미터		
직원	총인원	자격소지자	비고
예산(천원)	수입액 원	지출액 원	비고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

귀하

■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3. 10. 1>

포항시 시립 O O 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계약서(제8조 관련)

(앞쪽)

포항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포항시 시립 OO어린이집(이하 “을”이라 한다)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위탁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위탁할 어린이집은 포항시 관내에 소재한 포항시시립 OO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기간) ①위탁운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기간만료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으나(삭제), “을”은 위탁운영을 이유로 “갑”에게 재산권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3조(운영사항) “을”은 “갑”에게 포항시 시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동 업무수행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입소한 영·유아의 보육(교육 및 영양, 건강, 안전관리 등)
2. 보육계획서 수립 시행
3.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사 연구
4.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재원 및 보육료) ①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의 보조금과 보육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는 보육료 및 그 밖의 경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료 및 그 밖의 경비를 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은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보육교직원 임면) ① 보육교직원 임면은 「영유아보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갑”의 승인을 얻어 “을”이 임면한다.

- ②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소속 보육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보육교직원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보육교직원의 보수) “을”과 “동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수금액은 해당연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범위에서 “갑”의 승인을 얻어 “을”이 정한다.

제7조(입소대상자의 선정) “을”은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입소대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사업계획의 승인) “을”은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9조(재무회계) ① 모든 예산의 내용은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예산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현금출납에 대하여 소정 서식의 대장 및 증빙서에 따라 회계관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③ “갑”의 승인없이 지출예산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체 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
- ④ 결산 후 이월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
- ⑤ 본 협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재무회계는 어린이집재무회계규칙 및 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을”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을”은 본 약정 및 준용규정, “갑”의 명령이나 처분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입소한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보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3. “을”은 어린이집 운영중 수탁자 책임에 따른 신상 및 재정상 책임을 연대 부담하기로 하는 재정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을”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구입 또는 생산하거나 수탁협약시 인수받은 각종 자산 및 서책, 정보 등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기간 종료시 품목, 규격, 수량, 용도가 표시된 목록을 작성하여 “갑”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책임) ① “을”은 시설물 일체의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고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망실시는 “갑”에게 변상 또는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어린이집의 수탁운영 중 의무사항 준수 소홀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진다.
- ③ “갑”의 승인없이 지출한 예산 및 과다허위 지출한 예산은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을”은 수탁재산(건물, 집기, 비품 등)에 대한 각종 재해에 대하여 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에 “갑”을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사업자의 보험에 가입하고, 또한 어린이집 운영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재해에 대해서도 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수탁업무 개시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을”이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즉시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
- 2. 회계조사의 거부 또는 거짓 증빙서 작성 및 거짓 보고
- 3. 본 약정 내용을 위반할 경우
-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사업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 발생시

제13조(감독) ① “갑”은 매년 1회 이상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14조(준용규정)** ①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포항시 보조금관리 조례」,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포항시 보육 조례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지침에 따르며 본 협약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 공증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포 향 시 장 (인)
수탁자(을) OO어린이집 (인)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포항시 ----- ----- 조례」----- -----.</p>
<p>제2조(보육정보센터의 위탁운영자 선정) 시장은 포항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육정보센터의 위탁 운영자를 결정하고,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탁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자 선정) ----- ----- 육 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 다)----- ----- -.</p>
<p>제3조(센터의 위탁계약) ① 보육정보센터의 위탁운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제3조(센터의 위탁계약) ① 센터----- ----- ----- 센터----- -----.</p>
<p>② (생 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보조금 지급) 시장은 분기별로 보육정보센터의 사업 및 예산집행 실태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p>	<p>제4조(보조금 지급) ----- 센터----- ----- -.</p>
<p>제6조(입소순위) ①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8조 제2항에 따른 포항시청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 우선 순위</p>	<p>제6조(입소순위) ①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 -----</p>

<p>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p> <p>1. 포항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u>세자녀</u> 이상인 가구의 자녀</p> <p>2. ~ 7. (생략)</p> <p>② <u>제1호에서 제4호에 따른</u> 재원 중인 영유아가 있을 경우 우선으로 입소할 수 있으며, 동순위일 경우에는 경력을 우선으로 한다.</p>	<p>-----.</p> <p>1. ----- <u>세 자녀</u> -----</p> <p>2. ~ 7.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호부터 제4호까지</u>----- ----- ----- -----.</p>
---	---

별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지 제2호 서식】 제8조(위탁의 취소 등)</p> <p>1. 다음의 경우에 “갑”은 계약기간중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가. “을”에게 「<u>영유아보육법 시행령</u>」 제17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u>나.~라</u> (생략)</p>	<p>【별지 제2호 서식】 제8조(위탁의 취소 등)</p> <p>1. ----- -----.</p> <p>가.(삭제)</p> <p><u>가 ~ 다</u> (현행 나~라 와 같음)</p>
<p>【별지 제5호 서식】 제2조(위탁운영기간) ① 위탁운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u>기간만료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으나.</u> “을”은 위탁운영을 이유로 “갑”에게 재산권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p>	<p>【별지 제5호 서식】 제2조(위탁운영기간) ① ----- -----、 “을”은 ----- ----- -----.</p>

공 고

포항시 공고 제 2016 - 117 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우리시 관내 노상 등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자동차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및 대체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16. 01. 26.

포 항 시



1. 공 고 기 간 : 2016. 01. 26. ~ 2016. 02. 24. (30일간)

2. 폐 차 장 소 : 포항시 관내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체

3. 폐차 예정일 : 2016. 02. 25. 부터

4. 대 상 차 량 : 30수7811 외 1대(붙임 참조)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 20~30만원, 불응한 경우 100~150만원)

나.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 자동차 방치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다. 공고기간 내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6. 기 타 사 항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본 공고문으로 갈음합니다.

나.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차량 소유자(점유자)에게 있습니다.

7. 문 의 처 : 포항시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담당 ☎(054)270-3643

붙 임 : 1. 강제처리 대상 1부.

2. 압류 및 저당내역 1부. 끝.

강제처리(폐차) 대상

관리 번호	자 동 차 등록번호	차 명	소유자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비 고
2015-00260	30수7877	카렌스베타2.0 (2001)	박*주	680921- 1*****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2015-00261	90부2574	포터 II (2004)	㈜아**토건	110111- 0*****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압류 및 저당내역

번호	차량번호	차명	소유자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상주소	구분	축타기관	압류(저당)번호	압류(저당)내역	일자	2016-01-26
1	30수7877	카렌스베타 2.0(2001)	박*주	680921-1*****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입류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남구세무과-5272	지방세 체납(054-270-6271)		보관장소
						입류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북구세무과-13409	지방세 체납		
						입류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북건교-16088	주정차위반 대체압류 ('경북28다 5137' 를 대신하여 '30수7877' 를 압류함. 2012-053030)		
						입류4	포항남부경찰서	2013D1931018647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 ('193170121000086)		
						입류5	포항남부경찰서	2013D1931018652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 ('193170120954660)		
						입류6	포항북부경찰서	2013D1906020293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 ('190670130511688)		
						입류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남건교-20733	주정차위반 대체압류 ('경북28다 5137' 를 대신하여 '30수7877' 를 압류함. 2013-011660)		
						입류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남건교-20733	주정차위반 대체압류 ('경북28다 5137' 를 대신하여 '30수7877' 를 압류함. 2013-016438)		
						입류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남건교-20733	주정차위반 대체압류 ('경북28다 5137' 를 대신하여 '30수7877' 를 압류함. 2013-016536)		
						입류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남건교-22564	주정차위반 대체압류 ('경북28다 5137' 를 대신하여 '30수7877' 를 압류함. 2013-019588)		
						입류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남건교-22564	주정차위반 대체압류 ('경북28다 5137' 를 대신하여 '30수7877' 를 압류함. 2013-019863)		

번호	차량번호	차명	소유자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상주소	구분	축타기관	입류(저당)번호	입류(저당)내역	보관장소
						입류1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북건고-22726	주정차유턴 대체입류 ('경북28다 5137' 를 대신하여 '30수7877' 를 입류함. 2013-030513)	
						입류13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북구세무과-8158	지방세 체납(054-240-7271)	
						입류14	포항시 도시건설사업소 차량 등록과	차량등록과-20175	자동차검사지연과테러체납에의한 입류(20150910005151)	
						입류15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	집행과-2378	체납자본에 의한 압류등록(별금 징제번호:2013-4499)	
2	90부2574	포터II (2004)	(주)아**토건	110-1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저당1	현대캐피탈㈜	을부번호: 4104-2012-001246	설정일자:2012.09.12	금액:680만원
						입류1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	징수부-900473	건강(요양)연금,고용,산재보험,체납액(건강:3562020연금:5821620고용:8415210산재:0)	
						입류2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	징수부-900987	건강(요양)연금,고용,산재보험,체납액(건강:0연금:1748100고용:0산재:0)	
						입류3	국민건강보험공단 팽택지사	징수부-900990	건강(요양)연금,고용,산재보험,체납액(건강:538180연금:568110고용:0산재:0)	
						입류4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만안지사	징수팀-900830	건강(요양)연금,고용,산재보험,체납액(건강:1932920연금:2378860고용:0산재:0)	
						기업류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케디259	자동차가압류 기입등록	
						입류6	인천광역시 서구 경제환경국 환경보전과	환경보전과-13909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입류	
						입류7	인천광역시 서구 경제환경국 환경보전과	환경보전과-38112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입류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창조도시포항
Creative Pohang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공표

2016년 1월

pohang | 맑은물사업소
포항시 | 정수관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요약]

- 공 표 일 : 2016년 1월 29일
- 검 사 일 : 2016년 1월 중
- 검사기관 : 포항시상수도사업소, 한국수자원공사
- 검사대상
 - 포항시상수도사업소
 - 원 수 (하천수 및 호소수) : 10개소
 - 정 수 : 유강정수장 등 8개소
 - 노후지역 수도꼭지 : 10개소
 - 일반수도꼭지 : 87개소
 - 한국수자원공사
 - 정 수 : 학야정수장 1개소
- 검사항목
 - 원 수 : 환경기준(하천수, 호소수) 32개 항목
 - 정 수 : 먹는물수질기준 58개 항목
 - 노후지역 수도꼭지 : 먹는물수질기준 15개 항목(검사항목 추가)
- 검사결과
 - 정 수, 급수과정별, 노후지역 수도꼭지 : 먹는물수질기준 적합
 - 원 수 : 하천수 및 호소수 수질기준(BOD/COD기준)이며, 착수정 수질로 등급 산정

구 분 (상수원)	유 강	공 단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양 덕	약 성	비고
	안계댐수		형산강 복류수	형산강 복류수	진전지수	눌태지수	임하댐수	곡강천 복류수	
등 급									

▷ 원수 등급 선정 기준 (환경부)

매우 좋음	중 음	약간 좋음	보 통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
Ia	Ib	II	III	IV	V	VI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2016년 1월에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6. 1. 31.

포항시수돗물평가위원회위원장

시행일	1월 중	검사기관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한국수자원공사
-----	------	------	---------------------

정수

구분	검사항목	정수장, 상수원 공급지역 기준	유강	공단	양덕	제2	택전	갈평	병포	약성	학아
			안계댐수		임하댐수	형산강 안계댐수	복류수	전전지	늘대지수	국강천 복류수	(수자원공사) (12월)
			동지역 전체				연일읍	오천읍	구룡포읍	총해읍	신원,기대 일부
미생물	1.일반세균(Total Colory Counts)	100CFU/ml이하	0	0	0	0	0	0	0	0	0
	2.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대장균(Escherichia Coli)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납(Pb)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납소(F)	1.5mg/l이하	0.10	0.04	0.08	0.10	0.12	불검출	0.03	0.11	불검출
	6.비소(As)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셀레늄(S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8.수은(Hg)	0.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9.시안(CN)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크롬(Cr)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1.암모니아성질소(NH ₃ -N)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2.질산성질소(NO ₃ -N)	10mg/l이하	2.6	0.6	1.1	2.7	2.8	0.7	1.2	1.8	0.7
	13.카드뮴(Cd)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4.붕소(B)	1.0mg/l이하	0.05	0.02	0.03	0.06	0.06	불검출	0.02	0.04	0.02
건강상유해영양물질	15.페놀(Phenol)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6.다이아지논(Diazinon)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7.파라티온(Parathion)	0.06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8.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0.04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9.카바릴(Carbaryl)	0.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0.1,1,1-트리클로로에탄(1,1,1-Trichloroethane)	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1.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2.트리클로로에틸렌(TCE)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3.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4.벤젠(Benzen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5.톨루엔(Toluene)	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6.에틸벤젠(Ethyle Benzene)	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7.크실렌(Xylene)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8.1,1-디클로로에틸렌(1,1-Dichloroethylene)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9.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0.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0.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1,2-Dibromo-3-chloropropane)	0.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1.1,4-다이옥신(1,4-Dioxane)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소독제 및 소독 부산물	32.유리잔류염소(Free residual chlorine)	4.0mg/l이하	0.61	0.81	0.68	0.62	0.95	0.61	0.37	0.49	0.85
	33.총트리할로메탄(THMs)	0.1mg/l이하	0.042	0.044	0.047	0.049	0.053	0.030	0.026	0.021	0.022
	34.클로로포름(Chloroform)	0.08mg/l이하	0.007	0.037	0.039	0.009	0.007	0.021	0.008	0.010	0.017
	35.클로랄하이드레이트(Chloral hydrate)	0.03mg/l이하	-	-	-	-	-	-	-	-	0.0020
	36.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Dibromoacetone nitrile)	0.1mg/l이하	-	-	-	-	-	-	-	-	불검출
	37.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Dichloroacetone nitrile)	0.09mg/l이하	-	-	-	-	-	-	-	-	0.0017
	38.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Trichloroacetone nitrile)	0.004mg/l이하	-	-	-	-	-	-	-	-	불검출
	39.할로아세트에시드(Haloacetic acids)	0.1mg/l이하	-	-	-	-	-	-	-	-	0.017
	40.브로모디클로로메탄(Bromodichloromethane)	0.03mg/l이하	0.014	0.007	0.008	0.017	0.016	0.009	0.010	0.007	0.005
	41.디브로모클로로메탄(Dibromochloromethane)	0.1mg/l이하	0.017	불검출	불검출	0.018	0.022	불검출	0.008	0.004	불검출



구분	검사항목	평수장, 상수원 공급지역 기준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 성	학 아 (수자원공사) 신용기계업무
			안계댐수	임하댐수	형산강 복류수 안계댐수	진전지	늪대지수	곡강천 복류수			
			동지역 전체			연일읍	오천읍	구룡포읍	홍해읍		
질 량 영 향 에 적 영 향	42.경도(Hardness)	300mg/ℓ이하	113	51	84	121	121	32	55	110	92
	43.과망간산칼륨소비량 (Consumption of KMnO ₄)	10mg/ℓ이하	1.7	0.9	2.7	1.0	2.1	1.6	1.6	1.0	1.6
	44.냄새(Odor)	무취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5.맛(Taste)	무미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6.동(Cu)	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7.색도(Color)	5도이하	1	1	1	1	1	1	1	1	1
	48.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 ABS)	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9.수소이온농도(pH)	5.8-8.5	7.8	7.9	7.8	7.8	7.8	7.3	7.5	7.2	7.5
	50.아연(Zn)	3mg/ℓ이하	0.002	0.004	0.003	0.003	0.004	0.005	0.005	0.208	불검출
	51.염소이온(Cl ⁻)	250mg/ℓ이하	37.6	10.7	13.1	40.4	39.6	12.6	27.4	20.3	11.5
	52.총발견류물(Total solids)	500mg/ℓ이하	249	86	149	194	262	85	170	199	192
	53.철(Fe)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4.망간(Mn)	0.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5.탁도(Turbidity)	0.5NTU이하	0.05	0.06	0.05	0.04	0.08	0.07	0.09	0.09	0.08
	56.황산이온(SO ₄ ²⁻)	200mg/ℓ이하	63	13	20	68	69	18	31	67	17
	57.알루미늄(Al)	0.2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0.0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4
	58.모름알라이드	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판 정	경수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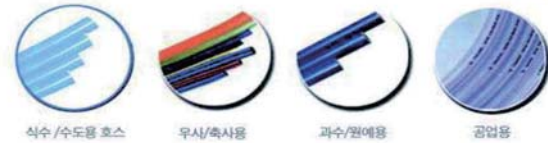
노후지역 수도꼭지

검사항목	기준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 성	
		양학로 17번길 4	대중면 채내길 21	삼호로 473번길 8-1	중앙로 36-1	택전리 220-1	오천읍 칠강로 734-3	구룡포읍 병포길 1-1	신흥로 861번길 17	
1.일반세균	100CFU/ml이하	0	0	0	0	0	0	0	0	
2.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대장균/분변성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암모니아성질소	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암소이온	250mg/ℓ이하	37.0	10.9	13.0	37.0	40.0	12.6	27.0	20.3	
6.유리잔류염소	4.0mg/ℓ이하	0.55	0.80	0.52	0.53	1.03	0.59	0.35	0.45	
7.철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8.망간	0.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9.구리	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아연	3mg/ℓ이하	0.020	0.006	0.002	0.008	0.007	0.007	0.005	0.195	
판 정	수도꼭지 수도물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 ▶ 관내 일반 수도꼭지 87개소 수질검사 결과 모두 적합
- ▶ 수도물에 대한 문의사항은 포항시상수도사업소 국번없이 121 또는 270-5454, 포항시 민원센터 ☎270-8282, 학아정수장 230-4791
-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홈페이지(<http://water.lpochang.org/>)

수돗물에서 소독 및 화학약품 냄새가 나는 이유

식당 등에서 끓인 보리차나 음식에서 소독의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호스사용으로 인한 냄새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PVC 호스의 경우, 페놀 및 2,4-디클로로페놀(91년 발생한 페놀사태의 원인물질)이 고농도로 검출되었으며, 특히 클로로페놀류는 강한 소독 냄새와 유사한 냄새를 유발시키며 가열을 해도 일반 소독용 염소와 달리 휘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이나 물에서 강한 소독냄새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정이나 식당에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무취 식수 수도용 호스**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시민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위한 안전한 수도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